

기안용지

문서번호 문서번호	인사 26-1-1/31	전화번호	104	선관교정	조합 선관사업
서리개간		시	장	<i>108</i>	
시행일자	1981.12.01	후결			
보존여부					
보 소 기 관	부시장 내무국장 인사과장	<i>0-222-1212</i>			
기안책임자	한동완	82.12.17 <i>1981.12.17 3812호</i>			
경유		발	시장	승	
수신	각안참조	신		세	
감소					
세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공고				
(제 1안) 내부결재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 규정에 의하여 82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고 별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문안 : 별첨 참조					
나. 공고일 : 1981. 12. 21. 장서					
다. 대상인원 : 238명					
라. 신청기간 : 1982년 1월 20일부터 1982년 1월 31일까지					
확인					
첨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부. 끝.					
발송					
(제 2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등 건 857.					

0201-1-KA-3
1969. 11. 10. 25

190mm x 268mm : 2면 1면 용지 8kg/m²

조 담 청(3,000), 대체비 인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2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고,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니 수당 지급 대상자중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청도록 조치
할것.

○ 지시 사항

가. 대상자 : 2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

○ 5급 이상 : 1922•1•1 ~ 1925•12•31•

(폐진의 경우 1930•12•31•까지 포함)

○ 6급 이하 : 1928•1•1 ~ 1931•12•31•

(폐진의 경우 1936•12•31•까지 포함)

나. 신청기간 : 1982•1•20 ~ 1982•1•31•

다. 작성 요령

(1) 근속년수 : 수당 신청 개시일 기준

(2) 정년일 : 6월말 (당해년도 1•1 ~ 6•30•까지 출생자)

12월말 (당해년도 7•1 ~ 12•31•까지 출생자)

(3) 정년 잔여기간 : 명예퇴직 지급 신청 개시일부터 정년일

(4) 퇴직하고자 하는 시기 : 결정통지일부터 30일 이내

(5) 수당 청구액 산출내역

○ 일반퇴직 : 퇴직월 봉급액 × 1/2 × 잔여월수

○ 상병퇴직 : 퇴직월 봉급액 × 1/2 × 지급규정 배수

(6) 정년 잔여기간 계산 :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계산
하지 않는다. 상병퇴직자는 6월 이상은 1년, 6월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7) 81년 신청대상자 : 81년도 기신청자도 신청서 기재내용
변경으로 제 신청토록 할것.

첨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부.

수신처 시산하 전기관

(제 3안)

No 304

수신 공보관

발신 : 내부국장

제목 시보 개재 의뢰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 제5조에 의하여 1982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공고를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시보에 게재로 저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일 : 1981. 12. 21.

나. 공고문 : 별첨 참조

첨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공고문 1부. 끝.

3 7 1 (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382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 제5조에 의하여 1982년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1. 12. 21

서 울 특 별 시 장

1. 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

2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공고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5년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

나. 진급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5년초과 10년 이내인 자

2. 수당 지급 대상 인원 : 238명

3. 수당 지급 신청

가. 신청기간 : 1982년 1월 20일 ~ 1982년 1월 31일

나. 신청절차 : 수당지급 협의자는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류를 구비
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4. 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 결정 및 지급

서울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급한다.

5. 수당지급 결정의 효력 상신

수당지급 결정통지를 받은 수당지급 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여 3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관내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결정
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기타 주당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끝.